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75 호

2017년4월18일(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구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자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98호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7-99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법관계법에 따른 권한 일부위탁의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820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여수시 공고 제2017-821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17-822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여수시 공고 제2017-823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31
- 여수시 공고 제2017-824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52

회 판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2017-98호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면허번호 (면허일자)	매립위치	매립면적 (㎡)	매립목적	공사기간	피 승인 자		비고
					주 소	성 명	
2017-1 (17.4.18.)	전라남도 여수시 우두리 697-108 지선	930.2	호안정비 (연안정비사업)	착공일부터 12개월 이내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해양항만 레저과)	

2017년 4월 일

여 수 시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 일부위탁의 고시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5년 실시한 담배회사의 세무 조사 결과 부과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불복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조세심판 등 수행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양산시, 사천시)간에 체결한 「권한 위탁 약정서」를 고시합니다.

2017. 04. 14.

여 수 시 장

경남 사천시, 양산시가 부과한 2015년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응 등 권한 위탁 약정서

경남 사천시, 양산시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제조주식회사(BATKM), 필립모리스코리아주식회사(PMK)에 부과한 2015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범칙사건(이하 “심판 청구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별표 참조)인 자치단체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지방세의 심판청구 등의 수행권한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양산시, 사천시(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권한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맺는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권한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위탁 업무범위) “갑”은 “을”에게 지방세 심판청구 등의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조세심판원(법원) 제출서류 검토, 심판청구 및소송대리인 선임 및 선임비용 결정, 계약체결 등 및 그밖에 심판청구 및 소송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일체 권한을 위탁한다.

제3조(권한위탁 업무지도감독 및 지원) “갑”은 “을”의 위탁업무 수행과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의 위탁업무 수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한다.

제4조(대표 심판청구 등 수행자 지정) “을” 자치단체장 중에 서울특별시장을 대표 심판청구 등의 수행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장은 심판청구 등의 대리인 선임절차, 선임비용 안분·지출, 계약서 작성, 환급액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서울특별시장은 심판청구 결정 및 소송 확정판결 후에 환급액 발생시 “갑”에게 통보하여 환급액 지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서울특별시장은 심판청구 및 소송 진행사항, 심판관회의결과, 준비서면, 소송일지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제5조(대리인 선임절차) “을”은 다수의 법무(회계)법인으로부터 「심판청구 등의 대리수임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에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한 후 심판청구 등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계약한다.

제6조(대리인 추가선임) “을”은 심판청구 및 소송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등의 대리인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7조(대리인 선임비용 부담) “갑”은 심판청구 등의 대리인 선임비용(기타비용 포함)을 경남사천시장, 양산시장이 안분 납입한 2015년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안분세액 비율만큼 부담 한다.

제8조(대리인 선임비용) “을”은 선임비용의 지급 최고한도를 정하고 심판청구 등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선임비용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9조(약정의 유효기간) 관련 지방세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소송비용 부담분 정산포함)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10조(약정의 효력발생) 이 약정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4월 14일

[별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1	서울특별시	45	연천군	89	청양군	133	경주시
2	부산광역시	46	강원도	90	홍성군	134	김천시
3	기장군	47	춘천시	91	예산군	135	안동시
4	대구광역시	48	원주시	92	태안군	136	구미시
5	달성군	49	강릉시	93	전라북도	137	영주시
6	인천광역시	50	동해시	94	전주시	138	영천시
7	강화군	51	태백시	95	군산시	139	상주시
8	옹진군	52	속초시	96	익산시	140	문경시
9	광주광역시	53	삼척시	97	정읍시	141	경산시
10	대전광역시	54	홍천군	98	남원시	142	군위군
11	울산광역시	55	횡성군	99	김제시	143	의성군
12	울주군	56	영월군	100	완주군	144	청송군
13	세종특별자치시	57	평창군	101	진안군	145	영양군
14	경기도	58	정선군	102	무주군	146	영덕군
15	수원시	59	철원군	103	장수군	147	청도군
16	성남시	60	화천군	104	임실군	148	고령군
17	고양시	61	양구군	105	순창군	149	성주군
18	부천시	62	인제군	106	고창군	150	칠곡군
19	안양시	63	고성군(강원)	107	부안군	151	예천군
20	안산시	64	양양군	108	전라남도	152	봉화군
21	용인시	65	충청북도	109	목포시	153	울진군
22	의정부시	66	청주시	110	여수시	154	울릉군
23	남양주시	67	충주시	111	순천시	155	경상남도
24	평택시	68	제천시	112	나주시	156	창원시
25	광명시	69	보은군	113	광양시	157	진주시
26	시흥시	70	옥천군	114	담양군	158	통영시
27	군포시	71	영동군	115	곡성군	159	사천시
28	화성시	72	증평군	116	구례군	160	김해시
29	파주시	73	진천군	117	고흥군	161	밀양시
30	이천시	74	괴산군	118	보성군	162	거제시
31	구리시	75	음성군	119	화순군	163	양산시
32	김포시	76	단양군	120	장흥군	164	의령군
33	포천시	77	충청남도	121	강진군	165	함안군
34	광주시	78	천안시	122	해남군	166	창녕군
35	안성시	79	공주시	123	영암군	167	고성군(경남)
36	하남시	80	보령시	124	무안군	168	남해군
37	의왕시	81	아산시	125	함평군	169	하동군
38	양주시	82	서산시	126	영광군	170	산청군
39	오산시	83	논산시	127	장성군	171	함양군
40	여주시	84	계룡시	128	완도군	172	거창군
41	양평군	85	당진시	129	진도군	173	합천군
42	동두천시	86	금산군	130	신안군	174	제주특별자치도
43	과천시	87	부여군	131	경상북도		
44	가평군	88	서천군	132	포항시		

공 고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 나.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안 제1조)
-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는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3.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9. ~ 2017. 5. 8. (20일간)

6.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hcgeun@korea.kr

○ 전화 : 061-659-3527

○ FA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통장·이장·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통장·이장·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 나. 종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이관하고, 이 규칙은 개정된 법령 및 조례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및 각종 통지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제11조)
- 나.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지급대상자 및 총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과 서식은 이 규칙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3.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9. ~ 2017. 5. 8. (20일간)

6.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hcgeun@korea.kr
- 전화 : 061-659-3527
- FA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을 작성하여 그 우편물수령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6. 그 밖에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별지 제2호 서식] 송달부(교부)

[별지 제3호 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송달불능부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별지 제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별지 제8호 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팀장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 고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 나. 종전「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3조)
- 다. 법령 체계에 맞게 종전「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종전 제7조 → 안 제2조)

3.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9. ~ 2017. 5. 8. (20일간)

6.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hcgeun@korea.kr

○ 전화 : 061-659-3527

○ FA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 나. 종전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법령 및 조례 체계에 맞게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과 서식을 분리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고, 제명을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안 제명)
- 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및 각종 통지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17조)
- 다.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라. 시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납세고지서의

-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및 미수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결손처분,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4.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9. ~ 2017. 5. 8. (20일간)

6.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hcgeun@korea.kr
- 전화 : 061-659-3527
- FA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 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여수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납부 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일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별표

- [별지 제1호 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결의서
- [별지 제2호 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부
- [별지 제3호 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수납부
- [별지 제5호 서식] 징수부
- [별지 제6호 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 [별지 제7호 서식] 이월 체납액 정리부
- [별지 제8호 서식]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 [별지 제9호(갑) 서식] 결손처분표
- [별지 제9호(을) 서식] 결손처분표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결정결의서</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 읍·면(동)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간 목표액	월까 지 목표액	추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수비율			지방세 환급금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대 년 간	대 월 간	대 조 정	본 월 분	본월분 까지 누계	
총 합계																
현 년 도 합계																
소계																
	00 세															
	00 세															

297mm×210mm(백상지 80g/m²)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p>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p>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p>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p>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기준) 을 위반하여 같은 법 10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4. 18.

여 수 시 장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4. 18. ~ 2017. 5. 2. (15일)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업소명	납부자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가산금포함)	비고
여수계장	곽*영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100 (수정동)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159,300	일반음식점 (지위승계함)

5. 유의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2017년 5월 2일까지**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장민채 ☎(061) 659-4236